

서울고등법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9나205548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은권, 안영수, 조윤진
원고승계참가인,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은권, 안영수, 조윤진
피고,피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정승식, 박은범 2.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순 3.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조광묵 4. F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욱 5.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문주혜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조광묵 6. 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최용석, 진성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07831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0910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변론종결	2020. 6. 19.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 및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 피고 D은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 피고 C, E, F, G, L는 피고 D과 연대하여 1)항 기재 돈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3. 19.부터, 피고 E은 2015. 2. 17.부터, 피고 F은 2015. 3. 14.부터, 피고 G은 2015. 3. 4.부터, 피고 L는 2015. 2. 18.부터,

각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의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각주1> 원고에게, 피고 C, D, E, F, L는 연대하여 80,000,000원, 피고 G은 피고 C, D, E, F, L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각주2><각주3>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542,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각주4>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항소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환송 전 판결은 원고의 주 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원고 및 참가인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O 등의 참가인에 대한 횡령행위와 관련된 피고들 부분, 즉 환송 전 판결의 참가인 패소 부분 중 위 횡령행위와 관련된 피고들 부분과 이와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원고 패소 부분 중위 횡령행위와 관련된 피고들 부분<각주5>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원고 및 참가인의 환송 전 이 법원 공동피고 H, I, J, K에 대한 상고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O 등의 참가인에 대한 횡령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참가인(2012. 11. 14. 변경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M'이다)은 바이오신약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N기관에 상장된 법인이었는데, 2012. 8. 23. 그 상장이 폐지되었

다.

2) 피고들은 참가인의 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로 재직한 사람들인데, 피고들의 구체적인 직위와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	직위	재직기간
C	이사	2008. 8. 29. ~ 2011. 3. 24.
	사내이사	2011. 3. 24. ~ 2012. 8. 31.
	대표이사	2012. 7. 6. ~ 2012. 8. 6.
D	이사	2008. 8. 29. ~ 2011. 3. 24.
	사내이사	2011. 3. 24. ~ 2012. 3. 30.
E	이사	2008. 8. 29. ~ 2011. 3. 24.
	사외이사	2011. 3. 24. ~ 2012. 6. 4.
F	사내이사	2008. 8. 29. ~ 2011. 3. 24.
	사외이사	2011. 3. 24. ~ 2012. 8. 31.
G	이사	2007. 3. 6. ~ 2010. 2. 26.
	사외이사	2010. 2. 26. ~ 2011. 3. 24.
L	감사	2009. 3. 20. ~ 2012. 8. 31.

3) o는 참가인, 주식회사 P(2013. 3. 29. '주식회사 AN'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P'라 한다), 주식회사 Q(2013. 9. 30. '주식회사 AO', 2015. 3. 31. '주식회사 AP', 2016. 7. 19. '주식회사 AQ'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R(2010. 10. 15. '주식회사 AR'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등 N기관 상장 법인들을 차명 지분 등을 통하여 지배하는 이른바 'S그룹'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참가인을 경영하였다. T는 2008. 8. 29.부터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7. 6. 해임되었고, U는 O의 지시를 받아 S그룹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3. 1. 사망하였다.

나. O, T, U의 참가인에 대한 횡령행위

1) 참가인은 의료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2010. 3. 24.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대금 23,154,920,740원을 납입받았다. O는 피고들이 참가인의 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 중이던 2010. 3. 26.부터 2010. 6. 23.까지 T, U와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유상증자대금 중 합계 127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3. 1. 사망한 U를 제외하고 O와 T는 위와 같은 횡령행위 등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별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참가인의 채권양도계약 및 그 합의해제

1) 참가인은 2014. 11. 27. 원고에게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 무렵 피고 C, E, L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는참가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피고 D, F, G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와 참가인은 2015. 6. 10.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12·24·28 내지 32·35 내지 37호증, 을가 제2호증, 을다 제1·2호증, 을바 제3·4호증, 을사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하고, 이하에 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청구 중 확장된 부분이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원고 및 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환송 전 이 법원에 제출한 2016.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는 취지이고, 위 서면에 '원고승계참가인'이 아닌 '원고'라 표시된 것은 오기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참 가인이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감축한 것은 그 감축 부분에 관한 소를 종국판결 선고 후에 취하한 것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2020.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다시 확장한 부분, 즉 2016.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한 금액<각주6>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소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6.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감축한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고,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중 불이

익이 되는 것은 공동소송인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16.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한 청구의 감축은 참가인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한편,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당해 소송제도의 목적과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는 있다.

다) 그런데 2016.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는 내용일 뿐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는 내용으로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및 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 법원과 환송 전 이 법원에 원고 및 참가인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제출한 모든 소송서류에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또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라는 표시가 있는 반면, 2016.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원고 소송대리인'이라는 표시만 있다. ② 2016.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부분에도 '원고에게', '원고는' 등의 기재만이 있을 뿐 참가인을 나타내는 기재는 전혀 없다. ③ 피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2016.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감축되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환송 전 이 법원도 2016.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원고만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라) 따라서 참가인이 2020.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확장한 것은 당초 승계참가신청서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을 확장한 것일 뿐 소의 일부 취하 후 다시 청구를 확장한 것이 아니어서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인정하는 사실

가) 참가인은 N기관 상장법인으로서 T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피고들이 수년 동안 이사 또는 감사

로 재직하였음에도, O가 참가인을 비롯한 N기관 상장법인들을 지배하는 S그룹의 회장으로서는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참가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나) 참가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00억 원에서 900억 원 상당의 결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계속하여 영업손실을 내고 있었다. 한편 참가인의 자산총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460억 원에서 550억 원이었고, 매출액은 2008년에는 135억 원이었으나 2009년 및 2010년에는 약 41억 원에서 81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참가인은 O 등의 횡령행위 당시 직원 수가 40명 내외였다.

다)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와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공시되는데, 참가인은 전자 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외에도 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신고, 주주총회소집결의, 기타 경영사항에 대하여도 공시하여 왔다. 참가인이 공시한 2010년 및 2011년 회계연도 각 사업보고서의 중요의결사항에는 참가인의 이사회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 재무제표 승인, 유상증자 안건 등을 결의한 사실 및 사외이사 참석인원 및 각 사외이사의 참석 여부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이 공시한 2011년 정기주주총회소집공고자료에도 피고 E, F이 2010년 18회 개최된 참가인의 이사회 회의에 각 출석률 100%, 83%의 비율로 출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실질적으로 O, T, U에 의해 운영되었고, 참가인의 이사회는 실제로 소집된 적이 없으며 피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거나 이사회 참석을 요구한 적도 없다. 외관상 작성되어 있는 참가인의 이사회 의사록은 피고들이 직접 출석하여 인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다.

라)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O 등은 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의 2010. 3. 24.자 유상증자대금 약 231억 원 중 127억 1,000만 원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참가인이 공시한 2010. 5. 14.자 분기보고서 및 2010. 8. 16.자 반기보고서에는 위 유상증자대금 중 약 180억 원을 의료사업 관련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위 계획에 따라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은 91억 원에 불과하고, 91억 원 중에서도 약 38억 원은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는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약 44억 원은 '타법인출자'에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참가인의 외부감사인인 AS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외부감사인은 참가인에 대하여 2010년에는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다가 2011년에는 참가인의 과거 5년간 사업실적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 당기순손실은 약 541억 원에 달하고 자본잠식률은 34%에 이

르므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참가인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데 재무제표는 위와 같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정' 의견을 표명하였고, 위 각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었다. 바) 피고들은 O 등의 횡령행위를 전후로 하여 3년에서 5년 동안 참가인의 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들이 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하게 된 경위 및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 C은 S그룹의 실질 사주인 O의 친구로서 O의 요청으로 2008년부터 참가인의 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는데, O 등의 횡령행위 당시에는 참가인의 이사였다. ② 피고 D은 2007. 5. 21.부터 2012. 10. 23.까지 S그룹에 의해 지배되어 S그룹의 계열사로 칭해졌고 참가인의 주요 주주기도 한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주식회사 P도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O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 D이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D은 O의 지시로 참가인의 이사 등으로 등재되었다. ③ 피고 E은 T의 외삼촌으로 T의 부탁으로 참가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T 또는 직원들이 가져오는 서류에 서명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다. ④ 피고 F은 변리사로서 참가인에 대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검토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⑤ 피고 G은 AK대학교 교수로 참가인이 개발하고 있던 면역세포치료제의 제품생산과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자문을 요청받고 그에 필요한 시험을 지도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지도 등을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참가인의 요청으로 이사 또는 사외 이사가 되었다. 피고 G 또는 그가 소속된 AK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참가인과 사이에, ㉠ 2007년 피고 G이 참가인에게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참가인은 피고 G을 참가인의 사외 이사로 등기하고, 등기 사외이사의 월 보수는 600만 원으로 하며, 연구보조금으로 1년에 2,000만 원씩 3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 2008. 2. 20. 참가인이 AK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대가로 기술료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 2009. 6. 8. 연구비 4,000만 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2009. 8. 5. 연구비 1억 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⑥ 피고 L은 U의 요청으로 감사로 재직하게 되었는데, 외부감사 전 결산서류를 검토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내용을 참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의 201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는 참가인에 대하여 '한정' 의견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피고 L가 작성한 2010년 및 2011년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위 각 감사보고서

는 A4 1장짜리 문서로 동일한 내용에 기간만 바꾸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사) 아래 '라. 책임의 제한'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참가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11·15·26·27·39·53 내지 55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1·2호증, 을바 제8호증, 을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갖는 한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라거나 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의 감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상호 독립적인 것이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있다고 해서 감사의 감사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다) 피고들은 참가인의 이사·사외이사·감사로서 다른 이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가인에 대하여 감시의무를 부담하는데, 특히 참가인과 같이 대표이사나 실질적 사주의 독단적인 경영이 행하여지는 회사의 경우 이사 등에게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 사주의 위법행위를 감독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라)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들은 참가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사회 소집에 관하여 통지를 받거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최소한의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허

위 사실이 공시되어 왔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유상증자대금 약 231억 원은 참가인의 자산과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유상증자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음이 각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어떻게 결의되었는지, 결의 이후 그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상증자대금 중 상당액이 애초 신고된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다는 공시가 이루어졌음에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마) 이처럼 피고들은 참가인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O 등의 위법한 직무수행에 관한 감시·감독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서 참가인에 대한 임무해태가 되고, 이와 같은 피고들의 임무해태와 O 등이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함으로써 참가인이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회계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사회에 출석하였어도 O 등의 횡령행위를 알 수 없었다거나,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여 감시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사주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참가인의 손해를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고들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야 한다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사·사외이사·감사로 등재된 피고들의 참가인에 대한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거나 횡령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피고들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시효기간인 3년 또는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 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서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일부 청구가 아니므로, 참가인이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부

분은 2020.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참가인의 청구 부분은 3년 또는 5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0 등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시효기간이 이미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제421조에 의하여 0 등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피고들도 책임을 면하였다.

나) 판단

상법 제399조 또는 제414조에서 정하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 또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 할 것이다. 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0 등의 2010. 3. 26.부터 2010. 6. 23.까지의 횡령행위에 관한 피고들의 임무해태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참가인이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확장한 것은 2020. 3. 2.로서 0 등의 횡령행위가 시작된 2020. 3. 26.로부터 기산하여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참가인의 청구 부분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

또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 완성 전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이상 0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따라서 0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피고들과 연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0 등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19조에 따라 0 등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피고들도 책임을 면하였다.

나) 판단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떤 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참가인이 0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0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

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관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의 면제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참가인의 2012. 3. 30.자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는 정관 제41조의2가 신설되고 그 규정을 감사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정관 제50조 제4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5·57·58호증, 을마 제2호증, 을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2012. 3. 3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는 내용의 정관 제41조의2가 신설되었고 그 규정을 감사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정관 제50조 제4항이 개정된 사실, 그 정관의 부칙은 정관 제41조의2와 제50조의 개정 규정은 2012. 4. 15.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사실, 참가인의 2012. 8.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이 신설 및 개정된 정관을 삭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들이 참가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O 등의 횡령행위로 인해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은 O 등의 횡령행위가 발생한 2010. 3. 26.부터 2010. 6. 23. 사이에 이미 발생하였고, 2012. 3. 3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설·개정된 참가인의 정관 제41조의2와 제50조 제4항은 2012. 4. 15.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신설 및 개정된 정관이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각주7>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상법 제450조에 의한 책임 해제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상법 제450조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2010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관하여 참가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그로부터 2년 동안 다른 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들의 참가인에 대한 책임은 모두 해제되었다.

나) 판단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O 등의 참가인에 대한 횡령행위가 발생하였던 2010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O 등의 횡령행위에 관한 내용과 피고들이 이사 또는 감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점이나 이에 관하여 참가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참가인의 손해액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O 등이 참가인으로부터 횡령한 돈의 합계는 127억 1,000만 원 (= 허위 선급금 지급 및 반환 8억 원 + 표지어음 발행 및 담보제공 40억 원 + Z은행 지분 취득 등 용도 유용 35억 원 + R 지원 용도 유용 30억 원 + 단기대여금 명목 자금 유출 14억 1,000만 원)이다.

2) 한편, 갑 제9호증, 을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 등은 참가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60억 원<각주8> 상당의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그 표지어음이 모두 회수된 사실, 외부감사인 AS회계법인이 작성한 참가인의 2012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T가 횡령행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액 68억 원<각주9> 중 60억 6,000만 원이 회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손해액 127억 1,000만 원 중 표지어음 발행 및 담보제공을 통한 횡령액 40억 원은 그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고, 허위 선급금 지급 및 반환을 통한 횡령 8억 원은 그 중 6,000만 원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O 등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확정적인 손해액은 86억 5,000만 원(= 127억 1,000만 원 - 40억 6,000만 원)이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이사 또는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 또는 감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2) 참가인의 이사회는 실제로 소집된 적이 없고 피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 사실, 피고들이 참가인의 이사·사외이사·감사 등으로 재직하게 된 경위 등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고, 갑 제2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로 피고 C, E, F, L는 2010. 1.부터 2012. 4.까지 월 100만 원씩 합계 각 2,800만 원을, 피고 G은 2010. 1.부터 2010. 12.까지는 6,440만 원, 2011. 1.부터 2011. 3.까지는 1,410만 원, 2012. 1.부터 2012. 4.까지는 710만 원 합계 8,560만 원을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사실, 피고 D은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참가인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따로 보수를 지급받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이러한 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던 것도 피고들이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주요 원인이 되었고, 참가인으로서도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이사 또는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들은 O 등의 지인으로 참가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었거나 참가인이 추진하는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문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의 직위는 참가인의 이사·사외이사·감사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직위에 등재된 경위,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보수, 임무해태의 태양 등은

피고 D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④ 피고 D의 경우 참가인의 주요 주주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O의 지시를 받아 S그룹의 경영에 일부 관여하였고, O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010. 3. 24.자 유상증자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유상증자대금이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O 등의 참가인에 대한 횡령행위와 관련된 피고들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D의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에는 2억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참가인에게, 피고 D은 2억 5,0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각주10>)부터(피고 C은 2015. 3. 19.부터, 피고 D은 2015. 2. 24.부터, 피고 E은 2015. 2. 17.부터, 피고 F은 2015. 3. 14.부터, 피고 G은 2015. 3. 4.부터, 피고 L는 2015. 2.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참가인이 2015. 6. 10.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이 미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O 등의 참가인에 대한 횡령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O 등의 참가인에 대한 횡령행위와 관련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 및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최승원 최웅영

별 지

T, O의 참가인에 대한 횡령행위 관련 형사재판 내역

- T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2. 8. 1. 전부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원안지원 2012고합107호), 이에 대하여 T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2노308호) 2013. 1. 30.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T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도2001호) 2013. 2. 20. 상고를 취하였다. T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허위 선금금 지급 및 반환을 통한 횡령

참가인은 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사용목적은 공시, 주주들로부터 2010. 3. 24. 유상증자대금 23,154,920,740원을 납입받았는데, T는 O와 공모하여 2010. 3. 26. 거래업체인 V 주식회사에 물품 선금금 명목으로 5억 원, W회사에 물품 선금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 송금한 후 참가인 직원을 통하여 위 거래업체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이를 S그룹 본사에 제공하여 S그룹 본사의 기존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대금 231억여 원 중 8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표지어음 형식으로 발행한 유상증자대금 60억 원 횡령

T는 O, U와 공모하여, ① 2010. 3. 29. 참가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유상증자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성 자산인 참가인 명의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한 후 S그룹이 X으로부터 빌린 2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위 표지어음 실물을 X에게 제공하고, ② 2010. 6. 11. 참가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유상증자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성 자산인 참가인 명의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한 후 사채업자인 Y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위 표지어음 실물을 Y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Y으로부터 빌린 20억 원을 S그룹 본사에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고, ③ 2010. 6. 23. 참가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유상증자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성 자산인 참가인 명의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한 후 Y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위 표지어음 실물을 Y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Y으로부터 빌린 20억 원을 S그룹 본사에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

었다.

- O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104호 등), 환송 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5노361호), 상고심(대법원 2016노372호), 환송 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6노199호), 제3고심(대법원 2016노20995호)을 거쳐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1. 허위 선금금 지급 및 반환을 통한 횡령

참가인은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용목적을 공시, 주주들로부터 2010. 3. 24. 유상증자대금 23,154,920,740원을 납입받았는데, O는 T와 공모하여 2010. 3. 26. 거래업체인 V 주식회사에 물품 선금금 명목으로 5억 원, W회사에 물품 선금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 송금한 후 참가인 직원을 통하여 위 거래업체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이를 S그룹 본사에 제공하여 S그룹 본사의 기존 사채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대금 231억여 원 중 8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표지어음 형식으로 발행한 유상증자대금 40억 원 횡령

O는 T, U와 공모하여, ① 2010. 6. 11. 참가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유상증자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성 자산인 참가인 명의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한 후 사채업자인 Y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위 표지어음 실물을 Y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Y으로부터 빌린 20억 원을 S그룹 본사에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고, ② 2010. 6. 23. 참가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유상증자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성 자산인 참가인 명의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한 후 Y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위 표지어음 실물을 Y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Y으로부터 빌린 20억 원을 S그룹 본사에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Z은행 지분 취득 등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

- 11) 이 부분 20억 원 횡령의 범죄사실은 O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참가인도 O 등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액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O는 U와 공모하여, 2010. 3. 25.경 유상증자대금 중 35억 원을 수표 형식으로 대체 출금한 후 같은 날 O가 지배하는 또 다른 N기관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Q 이 사인 AA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전액 출금하여 이를 Z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R 지원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

O는 U와 공모하여, 2010. 4. 14.경 유상증자대금 중 33억 원을 주식회사 AB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다음 날인 2010. 4. 15.경 주식회사 AB로부터 3억 원만을 상환받고도 2010. 5. 28.경 전액 상환된 것으로 처리한 후, 그 무렵 나머지 30억 원은 주식회사 AB 명의로 O가 지배하던 또 다른 N기관 상장사로서 상장폐지 위기에 있던 주식회사 R 발행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주식회사 R에 이를 교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5. 단기대여금 명목 자금 유출을 통한 횡령

O는 U와 공모하여, 2010. 5. 24.경 AC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9억 원, AD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5억 1,000만 원 등 합계 14억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0. 6. 26.경 AC으로부터 원리금 합계 907,767,123원, 2010. 7. 23. AD로부터 원리금 합계 510,000,000원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그 무렵 위 14억 1,000만 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각주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2016. 1. 22.자 항소장의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의 취소와 원고승계참가인 청구의 인용만을 구하고 있어, 원고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도 그와 같이 보았다[환송 전 판결 제3면 각주 1) 참조]. 그러나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환송 전 이 법원에 제출한 2016.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가 아닌 원고의 청구만을 일부 감축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22.자

항소장에 의하여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수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예비적 청구는 환송 전 판결에서 모두 기각되고 이에 대한 상고 또한 기각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각주3: 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의 공동피고 H, I, J, K에 대하여도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보수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환송 전 판결에서 모두 기각되고 이에 대한 상고 또한 기각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각주4: 원고승계참가인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확장하였다.

각주5: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중 일부에 해당하는데,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 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각주6: 피고 G은 50,0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80,000,000원이다.

각주7: 참가인의 2012. 3. 30.자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설 또는 개정된 정관 제41조의2와 제50조 제4항은 2011. 4. 14. 법률 제101600호로 개정된 상법 제400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인데, 그 개정 법률의 부칙 제3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각주8: 그 중 40억 원이 참가인 주장의 피해액에 포함된다.

각주9: 그 중 48억 원이 참가인 주장의 피해액에 포함된다.

각주10: 상법 제399조 또는 제414조에서 정하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참가인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2014. 11. 27.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채권양도 사실은 그 이전에 통지되었거나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통지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와 참가인이 2015. 6. 10. 위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참가인에게 다시 양도되었는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피고들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 또한 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